

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

연번	의안번호	안건	제안자	접수일자	의결일자	의 결	비고
1	2850	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순창군수	2021.11.02.	2021.11.24.	원안의결	
2	2851	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단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순창군수	2021.11.02.	2021.11.24.	원안의결	
3	2852	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	순창군수	2021.11.02.	2021.11.24.	수정의결	붙임1) 수정안
4	2853	순창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	순창군수	2021.11.02.	2021.11.24.	원안의결	
5	2854	북흥·인계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순창군수	2021.11.02.	2021.11.24.	원안의결	
6	2855	동계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	순창군수	2021.11.02.	2021.11.24.	원안의결	
7	2856	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순창군수	2021.11.02.	2021.11.24.	원안의결	
8	2857	순창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	순창군수	2021.11.02.	2021.11.24.	원안의결	
9	2858	순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순창군수	2021.11.02.	2021.11.24.	원안의결	
10	2859	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순창군수	2021.11.02.	2021.11.24.	원안의결	
11	2860	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순창군수	2021.11.02.	2021.11.24.	수정의결	붙임2) 수정안
12	2861	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의원발의	2021.11.02.	2021.11.24.	원안의결	
13	2862	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의원발의	2021.11.02.	2021.11.24.	원안의결	

[붙임 1]

1. 안건 : 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가. 제 안 자 : 순창군수

나. 접수일자 : 2021.11.02.

다. 심사일자 : 2021.11.22.

라. 의결일자 : 2021.11.24.

2. 의결 : 수정의결(수정안 첨부)

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6조 중

“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, 거짓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” 를

“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, 거짓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” 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환수)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,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환수) ----- ----- ----- <u>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</u></p>

[붙임 2]

1. 안건 :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가. 제 안 자 : 순창군수

나. 접수일자 : 2021.11.02.

다. 심사일자 : 2021.11.22.

라. 의결일자 : 2021.11.24.

2. 의결 : 수정의결(수정안 첨부)

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9조제4호의 “분기” 를 “월” 로 수정한다.

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<u>각호</u>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일 <u>3회이상</u> 청소를 하여야 한다. 2. (생 략) 3.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<u>파손·훼손된</u>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,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.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 <u>3회 이상</u> ----- -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파손·훼손된</u> ----- ----- -----. 4. <u>분기 1회 이상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</u> 	<p>제9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<u>월</u> ----- ----- --</p>